

「2026년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」 모집 공고

도내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「2026년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」 참여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7일

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

1 모집 및 신청접수

가. 신청기간 : 2026. 5. 7.(목) ~ 2026. 12. 31.(목) <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>

나. 신청대상

- (고용보험)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
- (산재보험)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

※ 지원사업 신청 전, **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 필수**

※ 본 사업은 근로자 사회보험료가 아닌 **사업주 본인의 고용·산재 보험료를 지원함**

<지원 제외대상>
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으로 운영 중인 자 [붙임자료 참고]
-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사업자

다. 신청방법 : 홈페이지, 우편, 방문, 이메일 접수 ※ **우편 이메일 접수 시 전화 확인 필수**

- 홈페이지: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(www.jbsos.or.kr) - [지원사업신청]
- 우편/방문 : [54898]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, 3층(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)
- 이메일: yujeong2251@jbba.kr
- 신청서류 (**필수**)

연번	제출서류	비고
1	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 동의서	서식1, 서식2
2	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	서식3
3	통장사본(대표자 본인명의) 1부 ※ 거래 가능 통장	서식4

라. 신청문의 :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(063-717-1305/1308)

2 지원내용

가. 지원기간 : 최대 3년

- 본 사업은 개인별 보험료 지원 시작월(소급적용 포함)으로부터 최대 3년간 지원함(예산 범위 내)
- 당해 연도 신청자는 해당 연도 1월 납부분부터 소급하여 지원함

나. 지원규모 : 약 500명 정도

- 개인별 보험료 수준에 따라 실제 지원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
- 신청서 접수 완료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여부 조회결과, 가입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'**지원대상자**'로 확정하고 개별 통보함
- '**지원대상자**'는 신청서 접수 및 사회보험 가입 확인이 **모두 완료된 시점**을 기준으로 선착순 선정함
- 본 사업은 당해 연도 편성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, **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**될 수 있음

다. 지원내용 : 도내 자영업자가 납부한 사회보험료(고용, 산재) 일부 지원

- (고용보험) 월 보험료의 **20%** 지원(실제 납부액 기준)

(단위 : 원)

기준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7등급
기준보수액	1,820,000	2,080,000	2,340,000	2,600,000	2,860,000	3,120,000	3,380,000
월 보험료	40,950	46,800	52,650	58,500	64,350	70,200	76,050
지원 비율	20%						
지원액	8,190	9,360	10,530	11,700	12,870	14,040	15,210

- 1) 보험요율 : 자영업자 고용보험요율 2.25% 적용
- 2) 월보수액 : 보험료 부과 기초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-497호)로, **가입자가 1~7등급 중 선택**
- 3) 고용보험료 인상 시 지원액이 변경될 수 있음

- (산재보험) 월 보험료의 **50%** 지원(실제 납부액 기준)

(단위 : 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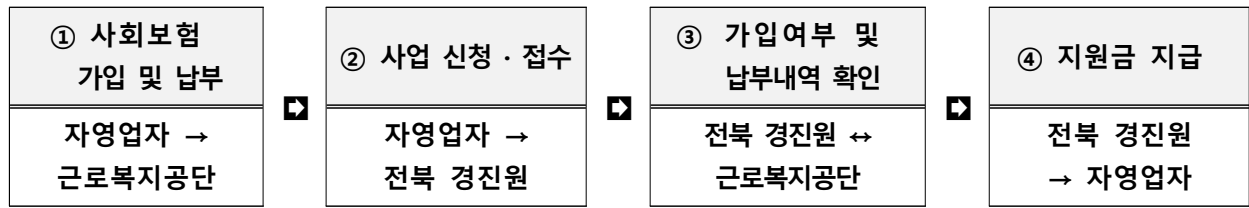
기준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
기준보수액	2,440,633	2,932,530	3,424,430	3,916,320	4,408,220	4,900,120
월 보험료	35,877	43,108	50,339	57,570	64,801	72,032
지원 비율	50%					
지원액	17,939	21,554	25,170	28,785	32,401	36,016

기준등급	7등급	8등급	9등급	10등급	11등급	12등급
기준보수액	5,392,020	5,883,920	6,375,820	6,867,710	7,359,610	7,851,515
월 보험료	79,263	86,494	93,725	100,955	108,186	115,417
지원 비율	50%					
지원액	39,632	43,247	46,863	50,478	54,093	57,709

- 1) 보험요율 : 산재보험료 평균 요율 1.47% 적용(업종별 요율상이)
- 2) 월보수액 : 보험료 부과 기초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-67호)로, **가입자가 1~12등급 중 선택**
- 3) 산재보험료 인상 시 지원액이 변경될 수 있음

3 지원절차

가. 지원절차 : 도내 자영업자가 보험료 선납 → 납부내역 확인 후 지원금 지급



나. 지급시기 : 매월 말까지 확정된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월별 지급

※ 근로복지공단의 고용·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실적 자료 회신 일정 등에 따라 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음

4 유의사항

- 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, **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※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**
- 나.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되거나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지원취소·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
- 다. **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기준으로** 사회보험 가입 여부 조회가 가능한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함
- 라. 신청정보 오기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(지원대상 제외 등)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
- 마. 사업 공고 및 안내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자에 귀속됨

5 문의처

연번	구분	기관명	연락처
1	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	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	063-717-1305/1308
2	고용·산재보험 가입 문의	근로복지공단	1588-0075
3	고용보험료 정부지원 문의	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	1533-0100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* 다만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익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홍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 문화에반하거나 사치, 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창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【서식2】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제공 동의서

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(이하 ‘경진원’)은 「2026년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」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· 이용하고,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 아울러 「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」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 · 산재보험에 가입한 개인정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고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1항제1호, 제17조제1항제1호, 제18조제2항제1호, 제3항,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개인정보 제공 목적	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	보유이용 기간
-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보 활용(수행기관: 경진원) - 관련기관(전북특별자치도, 근로복지공단) 제공 - 정책홍보 안내 등	<u>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</u> <u>이메일, 사업자등록정보,</u> <u>계좌정보, 사회보험료(고용·산재)</u> <u>납부실적, 기준보수등급, 가입내역 등</u>	5년
※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		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?	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

*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경과,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,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.

2.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
제공하는 자	제공받는 자	제공 항목	제공목적	보유이용 기간
전북특별자치도, 경진원(수행기관)	근로복지공단	성명, 주민등록번호, 사업자등록정보 등	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금 산출에 활용	5년
근로복지공단	전북특별자치도, 경진원(수행기관)	수행기관이 제공한 신청자의 사회보험료(고용·산재) 산출, 부과, 납부내역 등		
※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				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?		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	

*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은 세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,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, 수정할 수 있습니다.

2026년 월 일

업체명 : _____ 성 명 : _____ (인/서명)

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

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
※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유의사항

-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유효한 상태여야 함
-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사회보험 가입 여부 조회가 가능한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함
- 세무서,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

통장사본(대표자 본인 명의)

※ 대표자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만 가능하며, 거래제한 또는 중단 계좌는 불가